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3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◆◆◆, □□□, ★★★★★★㈜, ㈜♧♧♧♧♧♧, ◈◈◈

2. 조치내용

□ (고발) ◆◆◆, □□□, ★★★★★★㈜

□ (수사기관 통보) ㈜♧♧♧♧♧♧, ◈◈◈*

* ㈜♧♧♧♧♧♧의 대표이사 ◈◈◈을 양벌규정 적용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

○ ◆◆◆(★★★★★★㈜ 실질사주)는 ★★★★★★㈜가 담보로 제공한 ○○○○○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목적으로, □□□에게 지시하여 '23.2.21.~4.25. 및 '23.11.8.~'24.6.5. 기간 중 총 2,15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㈜♧♧♧♧♧♧는 '24.8.5.~8.19. 보유 중인 ○○○○○㈜ 주식 전량을 장내 매도한 사실 및 잔금지급 미이행으로 '24.8.20.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최종 해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총 2회 위반한 혐의가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**(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6조 제3항, 제443조 제1항 제6호, 제448조

□ **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·3·4항, 제444조 제18호, 제448조